

창원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251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 고 1.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3.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가 피고 D에게 한 확정채권양도 취소 부분 및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한 확정채권양도 취소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F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4181호로 한 확정채권양도를 취소한다. 피고 C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청양등기소 2021. 4. 7. 접수 제3351호로 한 확정채권양도를 취소한다.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청양등기소 2022. 4. 6. 접수 제2846호로 한 확정채권양도를 취소한다. 피고 D과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2,757,0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2010. 2. 9.부터 2010. 8. 26.까지, 원고 B은 2010. 3. 24. 및 2010. 3. 31. 각각 F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G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7. 5.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H으로 한 F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0. 4. 20.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20. 5. 22.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2021. 2. 16.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21. 4. 7. 피고 D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21. 9.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D은 2022. 4. 6. 피고 회사에게 2022. 4. 1.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제3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다.

마. 이 사건 임야는 2022. 5.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J에게 낙찰되었고, 피고 회사에게 2022. 6.

22. 82,757,017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양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 및 전득자들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양도는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D 및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배당금에 해당하는 82,757,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3양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로 이 사건 제2, 3양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고, 전득자를 상대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면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자 및 전득자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3양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K와 사이에 암석 매매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으나 H이 암석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자 K는 지인인 G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H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는 2016. 7. 5. K로부터 암석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암석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6. 7. 5.부터 2016. 8. 25.까지

K에게 암석 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H의 F에 대한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5.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H은 2017. 1. 18. M 주식회사의 계좌를 통해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암석 매매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H은 K에 대한 암석 매매대금 반환채권 또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F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양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H의 F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이었다가 2017. 1. 18. 변제로 인하여 위 차용금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되었고, 이후 K의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H과 G 및 F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해줌으로써 그 무렵부터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 1. 18. 이후로 더 이상 F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양도는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3양도 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